

2009. 04. 16(목)

제158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등 3건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총 무 위 원 회

【 목 차 】

1.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2
2.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4
3.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4. 2009년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17

거창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09. 03. 31.
- 나. 발 의 자 : 이창도 의원 외 1
- 다. 회부일자 : 2009. 03. 31.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04. 10.
- 마. 의안번호 : 제2009-10호

2. 제안이유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뜻을 정의함(안 제3조)
- 나. 장기기증의 범 국민 확산을 위하여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규정함(안 제4조부터 안 제6조).

다. 장기기증 접수창구와 장기기증 등록창구 설치 근거 마련(안 제10조).

라. 장기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4. 검토보고 요지

- 이 조례안은 건강한 삶을 살다가 운명하실 때 자신의 장기를 기증하여 꺼져가는 소중한 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생명나눔운동을 장려하여 아름다운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정 조례안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주민참여 기본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03. 27.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9. 03.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4. 10
- 의안번호 : 제2009-7호

2. 제안이유

- 민선지방자치 이후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해지고 날로 확대되어 가고 있어 주민과의 상호 협력체제 구축을 필요로 하는 행정 환경변화에 부응하고,
-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의 기회를 제도화하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주민자치 실현을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군수의 책무 및 주민의 권리와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위원회에의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군의 각종 위원회 위원 구성은 근거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 추천 등 공개절차에 따름
-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성과 장애인, 노인 등 주민참여 보장
-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
- 위원장은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는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가능한 정례화하도록 규정함
- 라. 회의자료 등 공개원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
- 마. 주민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주민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상시 공모 등을 통해 제안 받아 군의 중·장기계획 수립과 예산 및 행정에 반영
- 바. 정책토론 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
 - 주민은 군 주요 정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토론 청구는 선거권이 있는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하며,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1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토론 청구인 대표가 청구함
 -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내에 이에 응하여야 함

-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함
 - 군수는 토론 결과 검토 후 반영여부를 1개월 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 사. 주민의견 조사의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0조).
-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필요 시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주민의견 조사 후 1개월 내에 조사 결과 및 견해를 표명토록 함
- 아.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거창군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거창군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군정에 대한 주민참여 욕구가 다양화되고 확대되어 가는 현실에 비추어 주민의 권리와 역할, 위원회에의 주민참여, 회의자료 등 공개, 주민제안, 군 주요 정책사업에 대한 토론 청구 등 주민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요지

○ 개정안 제9조2항 중

- “다만, 일부지역에 관련된 정책인 경우 인접 3개 읍·면
으로 한다.”란 단서 신설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03. 27.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9. 03.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4. 10.
- 의안번호 : 제2009-8호

2. 제안이유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상위 법령이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정보공개 및 제증명 등의 수수료를 관련규정에 따라 조정하는 한편 법령 개정에 따른 신설, 삭제 등이 필요한 수수료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수수료 징수 근거를 명확히 제시함(안 제1조).
- 나. 여러 사람이 제증명 등을 청구할 경우에 대한 수수료 징수기준의 중복내용을 정비하고, 자동차에 관한 수수료 징수사무 폐지에 따라 필요없는 징수기준 규정을 삭제함(안 제4조).

다.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이루도록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를 조정하고, 상위 법령을 인용하는 관련 용어 등을 정비함(안 제7조).

○ 수수료 감면대상 범위의 조정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은 감면 대상에 포함
- 장애인은 감면대상에서 제외

○ 상위 법령 인용 용어의 정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활보호대상자”를“수급자”로 함

라. 정보공개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따로 정하고 그 감면비율을 조정함(안 제7조제3항 신설).

○ 현행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2종의 정보공개 청구건을 상위 법령(「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맞게 3종으로 따로 정하고, 그 수수료의 감면비율을 현행 100%에서 50%로 하향조정함

마.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대상 사무를 정비함(안 별표1).

○ 「비료관리법」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과 비료수입업 신고 업무가 도지사에서 군수로 이양됨에 따라 사무처리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수수료 항목 신설

- 비료생산업 등록 : 1건당 30,000원
- 비료수입업 신고 : 1건당 10,000원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등에 맞지 않는 수수료 항목 폐지

- 거래액(물품공급실적) 증명, 실적증명(공사·제조)

바. 상위 법령 및 다른 자치단체와 형평성을 이루도록 정보공개 대상과 수수료를 조정함(안 별표2).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별표]의 수수료 항목 및 금액과 일치시킴
- 사. 별표의 제목과 관련 조항 및 서식 등을 정비함(안 별표 1, 별표2, 별표 3).

4. 검토보고

-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7조, 각 개별법령 및 조례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 특정인에게 제공한 역무에 대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역무에 대한 비용 및 보상으로 그 수익자로부터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것으로서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및 다른 자치단체와 정보공개대상 범위의 형평성을 도모하고,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요율을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한 사무위임과 관련된 비료생산업 등록, 비료수입업 등록 등 2건의 수수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임.
- 그런데 현행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수료의 감면 등에서
 - 제1항제3호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에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
 - 제1항제4호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

보공개를 청구한 때,

- 제1항제9호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전액 감면하여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금번 조례안 개정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수수료의 감면범위와 요율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비교해
 - 제3항 제1호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경우와
 - 제3항제2호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에는 100분의 50만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던 것을 금번 개정 조례안에서는 수수료를 전액 징수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 감면요율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생략

7. 수정안 요지

- 개정안 제7조제1항제4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을 신설
- 개정안 제7조제3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비율은 별표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를 ⇒ 수정안 제7조제2항“「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로 하고
 - 개정안 제7조제3항제1호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 수정안 제7조제2항제1호 “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로 하며
 - 개정안 제7조제3항제2호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를 ⇒ 수정안 제7조제2항제2호 “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 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로 하고
 - 개정안 제7조제3항제3호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 제7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 하며
- 개정안 제7조제2항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은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 하여야 한다.”를 ⇒ 수정안 제7조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 등 정보공개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 함.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u>아니한다.</u></p> <p>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가 관내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p> <p>3.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의 대표자 또는 그 직원이 학술이나 연구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p> <p>4.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연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정보공개를 청구한 때</p> <p>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6. 「참전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7. 「고엽제후휴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8. 「광주민중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9. 「장애인 복지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 ----- ----- ----- ----- 않는다.</p> <p>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내에 주소를 둔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p>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직무상 필요에 따라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p> <p>3. 관내에 주소를 둔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 환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 다만, 해당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p> <p>4.(신설)</p>	<p>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① (개정안과 같음)</p> <p>1.-3.(개정안과 같음)</p> <p>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자 중 관내에 주소를 둔 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p>

수정안 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별표 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② 제1항에 따라 ----- -----<u>않는 제증명 등</u>----- 별표 3-----.</p> <p>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u>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그 감면비율은 별표 2에서 규정한 정보공개 수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u></p> <p>1. <u>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 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u></p> <p>2. <u>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u></p> <p>3. <u>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p>③ 제1항 및 제2항----- ----- 제증명 등과 정보공개----- -----.</p> <p>②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정보공개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p> <p>1. <u>관내에 주소를 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u></p> <p>2. <u>관내에 주소를 둔 교육기관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u></p> <p>3. <u>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u></p>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제출일자 : 2009. 03. 27.
- 제출자 : 거창군수
- 회부일자 : 2009. 03. 30.
- 상정 및 의결일자 : 2009. 04. 10.
- 의안번호 : 2009-9

2. 제안이유

- 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협소 및 노후로 인해 충혼탑 인근 죽전 근린공원 예정지에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여 청소년을 위한 공간 마련
- 관내 미 활용 폐교 매입을 통해 기업체 유치, 농산물 가공공장 부지 등으로 활용하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비한 공유재산 확보
-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골프의 대중화, 저렴한 이용료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2008년 친환경대

중골프장 조성사업에 우리군의 가조면 일대가 선정됨에 따라 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

- 군민의 다양한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문화 인프라를 확충하여 여가선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으로 문화원사, 전통문화전수회관 및 체험장 3동 신축

3. 주요내용

- 취득재산의 표시

(단위 : 천원)

사업명	재산종별	재산소재지	물건 및 지목	수량(m ²) (연면적)	공시지가/과세표준액 (사업비)	비고
계		4건		533,611	11,970,840	
청소년수련관 신축	건물	거창읍 가지리 272-1번지 외 5필지	건물	2,785	5,187,000	
폐교부지 매입	토지/ 건물	웅양면 한기리 915번지 외 19필지	계	81,561	2,349,801	하성초등학교 외 5개소
			토지	74,967	1,860,174	
			건물	6,594	489,627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부지매입	토지	가조면 도리 산43번지 외 6필지	토지 (임야 7)	446,000	143,412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건물	거창읍 장팔리 산5-1번지외 3필지	건물	3,265	4,290,627	

4. 검토의견

- 청소년수련관 신축안은 연면적 2,785m²(지하1층, 지상3층)로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 현 청소년종합지원센터가 노후 및 협소하여 신축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청소년들의 접근성이 좋은 죽전 근린공원 내에 건물을 신축하여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이며,
- 폐교부지 매입안은 관내 미 활용 폐교 중 매입대상이 되는 6개교 중 토지 74,967m², 건물 6,594m²로서

점점 황폐화 되어가는 학교 및 학교주변의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들의 비행을 방지함은 물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주민의 기대에 알맞은 사업 및 기업의 유치 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임.

- 거창친환경 대중골프장 조성 부지 매입안은 9홀 규모[사업비 210억(체육진흥공단 140억, 군비 70억)]의 사업으로 골프의 대중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대중골프장사업의 추진에 우리 군이 선정됨에 따라 가조면 도리 산43번지 외 6필지 446,000m²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것이며 2008년 11월 12일 후보지로 선정되어 2008년 12월 2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을 위한 협약체결을 하였음.

- 복합문화단지조성사업안은 거창읍 장팔리 일원에 연면적 3,265m²(문화원사 : 지하1층 지상3층, 전수회관 : 지하1층 지상1층, 체험장 : 초가집3동)를 문화관련 시설을 신축하여 문화 예술인의 창작활동의 공간을 마련하여 우리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부지는 2006년도(8,385 m²)와 2007년도에 추가로(2,839m²) 매입 완료하였음.
- 상기 4건의 공유재산 취득은 우리 군의 청소년문화사업 육성발전과 기업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문화 예술 활동 등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취득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됨.

-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6. 토론요지 : 생략
- 7.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 9.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 10.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